

기안용지

분류기호	문서번호	처리기관	제정규정	조항
	도청413-26	국립중앙도서관	전경사	항
처리기관				
서행일자				
보존년한				
보조기관	도청정보국	도청정보국	도청정보국	충무과장
기안책임자	김정길	이상영	법무팀장	
경유	각안캄조	발신	공제	1980.2.14
제 목	돼 계획 시설 (미안자) 지적 고사 <제1안> 내부 결재 1. 당국 관내 돼 계획 시설 (미안자) 이 별 아과 높이 변경 결정 되었기 지적 승인 절차를 이행 조치 할다. <제2안> 고사안 서울특별시 고사 제 호 돼 계획 시설 (미안자) 지적 승인 1. 서울특별시 고사 제 14호 (80.1.11)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돼 계획 시설에 대하여 돼 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사 제 463 호 (79.12.10)에 의거 이를 고 사 한다. 2. 관내 돼 시설은 원상 복구 및 정비와 밀 시 불나설에 비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 에게. 상임한다.			

원본은 영산구청으로 시정비과에
 2월 14일 (목) 13:00
 이 4

정서
 관인
 발음

서울특별시 시장

대 계획 시설 (미안지구) 지적 승인 조서

구분	종별	면적	면적	위 치	비고
기정	4-30	1870 [㎡]	20.880 [㎡]	문배동 - 마포동 (우천 북사도로)	12M
변경	"	"	24.060 [㎡]	문배동 - 우천간 530, 위치조정	15M

< 제 3 안 >

수신: 서울특별시 시장

참조: 시민과장

제목: 시장 직인 날인 의뢰

1. 당구 관내 대 계획 시설 (미안지구) 이 결
정된바 동년 지적 과를 위해 시장날인을 요청 하오나
재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기안은 사본 1부 과음 사본 1부, 도면 1부

< 제 4 안 >

수신: 건설부 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 시장

제목: 동인

1. 도원 442.2-32(80.1.19) 호의 관련 의
니다.

2. 위 대호에 의거 관내 대 계획 시설 (미안
지구) 을 별첨과 같이 지적 승인 하오기 보
니다.

첨부: 고시본 사본 및 도면 1부

< 제 5 안 >

수신: 서울특별시 시장

참조: 대 계획 1과장

제목: 등간

1. 도일 442.2-32 (80.1.9) 호외 관련 일
이다.

2. 위 대호에 의해 양구 관내 도시계획
사설(미반각구)에 대하여 지적내 하얏기 보
한다.

첨부: 고사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<제 6안>

주신: 축우회 장안 방선: 서울특별시

제목: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 고사본을 관보에 게재 의뢰 하오
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사본 사본 2부

<제 7안>

주신: 서울특별시

참조: 문화 공보

제목: 사보 게재 의뢰

1. 다음 고사본을 사보에 게재 의뢰 하오
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사본 사본 1부

<제 8안>

주신: 시민봉사 협회

제목: 등간

1. 양구 관내 도시계획 사설(미반각구) 이
설립한 것이 지적청에 하얏기 등록 하오
니 관계 도
면. 정리 및. 제반 업무의 경우 (없다) 바랍니다.

정수: 1972.12.29 (2) 1972.12.29 (2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
 도시계획시설 (미관지구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 (80. 1. 19) 로 변경 결정
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
 제 463 호 (79. 12. 10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 도서는 송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
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 시설 (미관지구) 지적승인조서
 =====

구분	종별	연장	면적	위치	비고
계정	4 - 30	1,870 M	20,880 M ²	문배동 - 마포동 (옥천북계도로)	12 M
변경	"	"	24,060 M ²	문배동 - 옥천구간 530 위치조정	15 M